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37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요구에 맞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일괄정비조례안에 미반영된 조례를 추가 반영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신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하고, 제36조제5항제1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심신상의 장애가”를 “심신쇠약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p> <p>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하고, 제36조제5항제1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로 한다.</p>
<p><신 설></p>	<p>제11조(「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p> <p>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5호 중 “심신상의 장애가”를 “심신쇠약이”로 한다.</p>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심신장애”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 중 “심신의 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호 중 “심신의 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하고, 제36조제5항제1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심신상의 장애가”를 “심신쇠약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